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18 선고 2019가단51264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론 종결 2021. 1. 14

판결 선고 2021. 2. 18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지분에 관하여 2016. 6.2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. 7. 5. 접수 제U 3998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소외 D은 2016. 6. 21. 소외 E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로부터 25,000,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 및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였다.

이에 소외 회사가 위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82370호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2017. 3. 3. '위 D은 소외 회사에게 25,295,890원 및 그중 24,145,550원에 대하여 2017. 2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라'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,위 지급명령은 2017. 3. 7. 위 D에게 송달되어 2017. 3. 22. 확정되었다.

나.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고 2018. 3. 15. 위 법 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교부받았으며,2018. 3. 20. 위 승계집행문등본이 위 D에게 송달되었다.

다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은 위 D의 부(父) 마이하 '망인'이라고 한다)의 소유였는데, 망인이 2016. 2. 21.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,자녀들인 위 D, 소외 G, H, I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.

라. 피고와 위 D,G, H, I은 2016. 6. 28.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고 한다)를 하였고,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5. 접수 제133998호로 2016. 2.21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가 마쳐졌다.

마. 위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2/11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,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2, 3, 4, 9호증,갑 제10호증의 1, 2, 갑 제11, 12의 각 기재, 남양주시,법원행정처,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위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,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교부받았으므로 원고 의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 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 다29119판결 등 참조).

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 무자의 악의,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 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의 의미하고,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 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판결 등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위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 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무자력이 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인 위 그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며,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의악의도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D이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으므로 위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었고, 피고에게도 악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 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약 중 위 D의 상속분인 2/11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D의 상속분인 2/11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정민

별지